

■ 교육

사회봉사, 명문대 합격 결정적 요소 될 수 있다

최근 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봉사(커뮤니티 서비스)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거의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을 놓고 누구를 뽑을까 고민할 때 사회봉사 경험은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아카데믹 기록이 약한데 봉사 활동 기록만으로 합격을 얻어 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사회봉사라는 단독 요소로는 합격이 될 수 없다. 부연하면 GPA가 낮고 SAT, ACT 기록이 낮은 학생이 봉사활동만 많다고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기록이 비슷해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사회봉사는 tie-breaker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학 사정관들은 사회봉사를 많이 한 학생을 왜 좋아하고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큼 교실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성적 요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발 요소이지만 높은 GPA와 SAT, ACT 점수만으로 입학허가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학들은 지원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한 모습과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사회봉사, 지역봉사다.

사회봉사,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이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단지 몇



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학생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은 이런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상호작용을 한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에게 연민과 리더십, 창의력, 통찰력, 협동심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들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교실에서 공부를 잘 하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공동체 밖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동시에 캠퍼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한다.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 대학의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고 답을 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대학입학사정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다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즐기고 자기의 관심사에 맞는 사회봉사 활동을 찾아야 한다. 양보다는 질이다. 잠깐 하는 것보다 수년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은 11학년때 하지 말고 9학년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짧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오래 활동하는 것이 좋다.

■ 법률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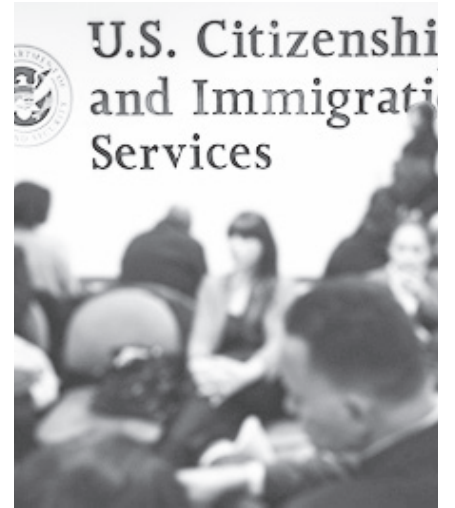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2): Section 245(i)

▶ 1218호에서 계속됩니다.

245(i)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고객은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며칠 내에 시민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님이 한 분 있는데 현재 DACA신분이며 생년월일은 2000년 11월 생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따님의 존재는 추후에 알게 되었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게 된 경로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본인의 시민권을 통해 딸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싶는데 미국 내에서 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시민권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가 밀입국/불체자이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I-601A waiv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님이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재입국 10년 금지에 대한 Waiver를 받고 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다시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가 따님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겪게 될 extreme hardship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I-601A waiver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이전에 245(i)가 적용되는지 먼저 체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어머니가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초청에 대한 I-130을 제출한 시기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이고 따님이 출생한 2000년 11월 이후라면, 따님은 어머니의 I-130의 제출 사실을 근거로 245(i)면제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I-130이 'properly filed' 였으며 'ap-provable when filed' 를 자동으로 만족시



키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머니와의 따님의 가족관계 증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45(i) penalty 인 \$1,000도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밀입국과 불체 기록을 면제받으면서 동시에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이점 일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245(i) 는 I-485단계에서 적용되는 면제조항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따님을 초청하는 I-130이 우선 승인되어야 하고, 자녀초청의 문호가 열린 다음에야 245(i)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waiting 기간이 5-6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DACA를 통한 취업이민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